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21일,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문진석)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 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유지관리는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 후 각 기계설비별로 전체적인 적합 여부(적합: ○, 조치필요: ×)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사유를 표기·기록하고,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등과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각 기계설비의 점검항목

별 적합 여부, 미흡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필요사항, 장비를 사용한 측정사진 및 측정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이처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능점검이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은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기준 준수)과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보존·제출, 성능점검 업무의 대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제목을 각각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계설비 성능점검’으로 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을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로 하며(안 제16조제2항),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에서 성능점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시장등이 관리주체로부터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4항), 개선명령의 미이행 또는 이행 미보고의 경우에는 벌칙(안 제28조제1호의2) 또는 과태료(안 제30조제1항제3호의2)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각각 별도의 조에 규정하여 두 제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시장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권영진의원과 문진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